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33
----------	-------

발의연월일 : 2026. 7. 30.

발 의 자 : 이연희 · 송재봉 · 김정호
임미애 · 복기왕 · 문진석
박용갑 · 서미화 · 염태영
손명수 · 이정문 · 이광희
진성준 · 서영석 · 임호선
안태준 · 김남희 · 최혁진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상황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나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 현장의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적시에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위기사유에 “가구원의 돌봄·양육 등의 사

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자체 조례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임시거소 확보 노력을 규정하고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 연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도모하는 한편, 긴급지원의 종류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아동양육 위기가구에 대한 촘촘한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4조제4항 신설 및 제9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가구원의 보호, 양육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 중 “비용 지원”을 “비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단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지원”으로 한다.

바. 돌봄지원: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 가구의 보호, 양육 등의 사</u> <u>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u>
8. · 9. (생 략)	9. ·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주거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임시 거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u>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1. -----

직접지원 가.·나. (생략)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u>비용 지원</u> 라.·마. (생략) <u><신설></u> <u>바. (생략)</u>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u>단체와의 연계 지원</u> 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 ----- <u>비용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연계</u> 라.·마. (현행과 같음) 바. 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u>지원</u> <u>사. (현행 바목과 같음)</u> 2. ----- ----- 가. ----- ----- ----- ----- ----- -<u>단체,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의 연계 지원</u> 나. (현행과 같음)
---	---